

[공통사항]

- ◆ **시민안전공제는?**
 - 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(지자체)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(시·군·구민)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. **※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(공제수익자)에게 있습니다.**
- ◆ **보장기간**
 - ㉠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.
- ◆ **보장내용**
 - ㉠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- ◆ **주요용어**
 - ㉠ 피공제자 :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
 - ㉡ 공제수익자 :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
 - 피공제자 생존 시 : 본인 / 사망 시 : 법정상속인 /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
 - ㉢ 상해 :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
 - ㉣ 장해 :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(장해분류표 적용)
- ◆ **공통면책사항**
 - ㉠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 - ㉡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
 - 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
 - ㉣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
- ◆ **소멸시효**
 - ㉠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[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]

- ◆ **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**
 -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- ◆ **자연재해란?**
 - ㉠ 자연재해'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'자연재난' 및 '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'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.
 - 가. 자연재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. 다만,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.
 - 나. 열사병 및 일사병: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.0(열사병 및 일사병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- 다. 저체온증: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.0(저체온증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- ※ 단,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.
- ◆ **주요면책사항**
 -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 - ㉡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
[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고 사망]

◆ 보상하는 손해
(만15세 이상)

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
◆ 사고의 정의

- ㉡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㉢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
 - 붕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. 단,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.
 - 침강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.
 -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.

◆ 주요면책사항

- ㉣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- ㉤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·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
- ㉥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

[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애]

◆ 보상하는 손해

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※ 단,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◆ 사고의 정의

- ㉡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㉢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
 - 붕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. 단,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.
 - 침강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.
 -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.

◆ 주요면책사항

- ㉣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- ㉤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·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
- ㉥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

[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]

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◆ 사고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㉡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㉢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㉣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◆ 대중교통수단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㉤ 여객수송용 항공기 ㉥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㉦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(전세버스 제외) ㉧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 ㉨ 여객수송용 선박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㉩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㉪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㉫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㉬ 교통수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

[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]

◆ 보상하는 손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단,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
◆ 사고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㉡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㉢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㉣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◆ 대중교통수단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㉤ 여객수송용 항공기 ㉥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㉦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(전세버스 제외) ㉧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 ㉨ 여객수송용 선박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㉩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㉪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㉫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㉬ 교통수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

[익사사고 사망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◆ 보상하는 손해
(만15세 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㉡ 익사 사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. ㉢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㉣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|

[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
(만12세 이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-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㉢ 자동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및 「자동차관리법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<p>※ 단,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</p>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㉣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㉤ 시운전, 경기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㉥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㉦ 자동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㉧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|

[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]

◆ 보상하는 손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㉓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(피공제자)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.
◆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㉔ 성폭력범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형법」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(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, 제301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 등 살인·치사), 제302조(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),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,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(특수강도강간 등), 제4조(특수강간 등), 제5조(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), 제6조(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), 제7조(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, 강제추행 등), 제8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, 제9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,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, 제11조(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) ㉕ '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' 사실의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, 고소,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(약식기소 포함)된 경우를 말합니다.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㉖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㉗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㉘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.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 ㉙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

[실버존 사고 치료비]

◆ 보상하는 손해 (만65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㉓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[별표2]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, 공제수익자(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)에게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◆ 교통사고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㉔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㉕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
◆ 자동차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㉗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, 타이어식 굴삭기,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 <p>※ 단,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</p>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㉘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㉙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㉚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㉛ 자동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

[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]

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◆ 사고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㉡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·접촉(적재물을 포함합니다)에 의해 발생한 사고 <p>※ 단, 사고라 함은 경찰에 신고·접수된 건에 한합니다.</p>
◆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개인형 이동장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) 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중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의자차로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<p>※ 단, 전기자동차, 전기자전거(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), 어린이용 장난감,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</p>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㉢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㉣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로 인한 피해

[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]

◆ 보상하는 손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[별표1]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(피공제자)에게 후유장해공제금(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)을 지급합니다.
◆ 사고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㉡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·접촉(적재물을 포함합니다)에 의해 발생한 사고 <p>※ 단, 사고라 함은 경찰에 신고·접수된 건에 한합니다.</p>
◆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개인형 이동장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) 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중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의자차로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<p>※ 단, 전기자동차, 전기자전거(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), 어린이용 장난감,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</p>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㉢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㉣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로 인한 피해

[사회재난사망]

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) 공제수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◆ 사회재난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㉡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'사회재난'을 말합니다. 다만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. ㉢ 제1호의 '사회재난(감염병제외)'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.
◆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㉣ 제1조(공제금의 지급사유)의 '사망'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. - 관공서에서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㉤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(공제금의 지급사유)의 '사망'의 원인 및 '사망 공제금'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㉥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
[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]

◆ 보상하는 손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공제금(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)을 공제수익자(피공제자)에게 지급합니다.
◆ 자연재해의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㉡ 자연재해'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'자연재난' 및 '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'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자연재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. 다만,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. 나. 열사병 및 일사병: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.0(열사병 및 일사병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다. 저체온증: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.0(저체온증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※ 단,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.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㉢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㉣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
[개물림·개부딪힘사고 진단비]

◆ 보상하는 손해

-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 3조(의료기관)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,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(피공제자)에게 지급합니다.

◆ 용어의 정의

- ㉠ 개물림·개부딪힘사고 : 들개, 유기견,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를 말합니다.
- ㉡ 의료기관 :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 의료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종합병원)을 말합니다.

◆ 주요면책사항

-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- ㉡ 애견미용사, 훈련사, 브리더, 수의사 등 반려견업계 전문종사자
- ㉢ 유기견봉사활동을 하는 동안